

<p>여야 할 市稅에 대하여는 증전의 예에 의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決定하고 그 內容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案</p>	<p>第5條(施行規則)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는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p>
<p>第1條(目的) 이 條例는 都市民의 生活便益 圖謀 및 快適한 都市環境을 위하여, 都市 가스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및 가스都賣事業者 (이하 “都市가스事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稅의 不均一 課稅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附 則 ①(施行日) 이 조례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時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p>
<p>第2條(不均一課稅) ①第1條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市稅를 100분의 50 輕減한다.</p>	<p>附 則 이 조례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1. 取得稅 都市가스事業에 직접 使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土地(事業 許可를 받기전 6月이내에 取得한 土地를 포함한다) 및 建築物에 대한 取得稅</p>	<p>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p>
<p>2. 登錄稅 都市가스事業과 관련된 財產權 기타(자동차의 등록을 除外한다)에 관한 등기 및 등록에 관한 登錄稅</p>	<p>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p>
<p>②都市가스事業者가 取得 또는 등기, 등록한 財產을 取得 또는 등기, 등록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유의 業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 후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는 이미 免除한 取得稅 및 登錄稅를 각각 追徵한다.</p>	<p>③第2項에 規定한 駐車場의 年間 수입금액과 공시시가에 대하여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年間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年間(直前年度 6月 1日부터 當該年度 5월 31日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年間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p>
<p>第3條(事務處理의 委任)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不均一課稅에 관한 事務는 當該 課稅客體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處理한다.</p>	<p>年間收入金額 = <math>\frac{\text{營業期間중의 收入期間}}{\text{營業期間(日數)}} \times 365</math></p>
<p>第4條(輕減申請) ①이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不均一課稅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事實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갖추어 관할 區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p>	<p>3. 공시시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시가를 말한다. 부칙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適用時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p>

를 제외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조례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  
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불균일과세등)”를 “(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로 하고,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第3項을 削除하고, 第2項중 “第1項의”를 “第1項 및 第2項의”로 하며,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家口 2住宅에 該當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第3項으로 한다.

①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免除한다.

②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第112條 第1項 및 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產出한 取得稅 및 登錄稅額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項중 “공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을 “공단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법인의 등기시에는”으로 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  
市稅課稅免除條例중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市稅課稅免除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項중 “서울特別市無許可建物整備事業補償金支給條例” 第4條 第1項의”를 “自治區 無許可建物整備에대한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의”로 한다.

附則 第2項을 第3項으로 하고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서울特別市無許可建物整備事業補償金支給條例” 廢止후부터 適用한다.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대한  
市稅課稅免除에관한조례중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社會教育施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